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443
----------	-------

발의연월일 : 2025. 11. 20.

발 의 자 : 임오경 · 황명선 · 진성준
허성무 · 민형배 · 이기현
박수현 · 김재원 · 이개호
양문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무관심으로 지역체육진흥협의회가 운영되지 아니하거나 실무자 참석 등 회의 개최만을 목적으로 한 형식적 운영에 그치거나, 지역체육진흥협의회가 입법취지와는 다르게 지역 체육정책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실질적 거버넌스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음.

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 개최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협의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도록 규정한 것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하여 지역체육진흥협의회가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를 “제4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로, “계획을 수립하고”를 “계획, 제10조제1항에 따른 직장 체육 진흥 시책,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노인과 청소년의 체육 진흥 시책,”으로, “관한”을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당”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① <u>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u> ②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u>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u>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① <u>제4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 계획, 제10조제1항에 따른 직장 체육 진흥 시책,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노인과 청소년의 체육 진흥 시책, -----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 ② ----- ----- ----- -----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u>해당 -----</u> --.